

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2. 3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2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12. 13.(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
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건설과장 이병인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법 제77조(감독관청의 승인)의 규정에 의거 구도노선인정에 부산광역시의 승인으로 구도로의 관리주체가 사하구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구도로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등의 세입귀속주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로 변경되어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신설의 목적
-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
- 도로점용료 징수시기 및 분할납부 방법
- 점용료 징수방법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도로관리의 주체가 종전의 광역시(도)에서 광역시(도), 구(군)으로 이원화하도록 2002. 9. 5부로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법에 명시되어 구도의 노선이 인정되었으며,
- 특히 도로점용료 징수는 모든 도로에 대하여 시 세입 후 각 구에 징수교부금 30%를 지급해오던 방식을 변경하여 시·구도 관리청 별로 세입조치하고, 광역시는 시 세입 후 구에 50% 교부금을 지급하므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는 물론 구의 세입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
- 본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